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. 7. 7 선고 2020가단47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단체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7. 7.

주 문

1. 피고는 C, D, E에게 전남 완도군 F 전 493㎡ 중 각 1/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96. 8. 23. 접수 제100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편병호

별지

1) 원고는 C, D, E의 각 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청구하고 있으나, 피고를 상대로 C, D, E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/3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.